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37호 2019. 6. 13.(목)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9-68호 도로명주소 고시 1
 남해군 고시 제2019-72호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고시 4
 남해군 상하수도사업소 고시 제2019-1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고시 11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54호 남해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19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9-779호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23
 남해군 공고 제2019-784호 도시계획도로(소로2-37호 남해군청~서면마을회관) 개설공사 및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노인복지관~운동장) 개설공사 ... 27
 남해군 공고 제2019-794호 도시계획도로(소로2-14호,파크에비뉴~정원패밀리)개설공사 보상 계획 열람 공고 33
 남해군 공고 제2019-795호 공시송달 공고 38
 남해군 공고 제2019-801호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노인복지관~운동장) 개설공사 보상 계획 열람 공고 40
 남해군 공고 제2019-809호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44
 남해군 공고 제2019-812호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누락분]48
 남해군 공고 제2019-814호 남해군관리계획(남해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공람·공고52
 남해군 공고 제2019-816호 남해군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정치망어업권 포기사항 공고60

알 림

남해군의회 규칙 제29호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61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5, 행정 3045)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9 - 68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상리 73 외 33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도 열 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055-860-3472~3474)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6. 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남 해 군 공 보

(2) 제 637 호

2019년 6월 13일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부여

연번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상리 73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2122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744-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699-19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삼천리 815-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981-4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4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714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남해대로 107-13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5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367, 368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동로 35	20090427	행정구역명을 이용, 남동로 뒷산이 남초꽃처럼 생겨 난화산이라 하였는데 산 밑으로 사람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게 되자 남동이라 불렀다고 함
6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1184-7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176-187	20090427	설천면 소재지를 지나는 도로임을 반영
7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신126-6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설천로 8	20090427	행정구역명을 이용, 섬의 모양이 발같이 생긴 데에서 유래
8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708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울동로 38-1	20090427	고현면 소재지를 지나는 중심도로, 마을 중앙시장 입구에 탑이 있어 붙여진 이름임
9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708-1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탐동로 38-2	20090427	고현면 소재지를 지나는 중심도로, 마을 중앙시장 입구에 탑이 있어 붙여진 이름임
10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복변리 601-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진로 119-6	20090427	남해읍 소재지의 중심도로로서 아름다운 남해를 나타내는 옛 지명을 반영
1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기인리 43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신로 622	20090427	고려 중선왕때 개칭한 창선의 옛 지명에서 유래
12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흥현리 1492-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824	20090427	남면의 중심도로임을 반영, 남해의 가장 남쪽에 있다 하여 신라 신문왕때부터 남면이라 불렀다 함
13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553-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208-2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1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553-7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208-4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1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868-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596-15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16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27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590-23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17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652-20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강진로438번길 33	20090427	강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3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비란리 273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고설로285번길 14	20100915	고설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평산리 1695-2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1739번길 5	20090427	남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3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치리 558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치로177번길 15-69	20090427	남치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1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705-14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2205번길 25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2,0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2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601-2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2431번길 63-25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3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삼천리 698-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2984번길 23-3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9,8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4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608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3332번길 37-22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3,3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5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당항리 1952-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두양로256번길 45-29	20090427	두양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5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705-4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성소로16번길 115	20090427	성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7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의리 745, 745-1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775번길 37-8	20091023	설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7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8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879-5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조도1길 34-2	20100915	미조리에 있는 유인도, 섬의 형상이 새가 날아가는 모습과 같다고 하여 새섬이라고도 함
29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183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신로579번길 44-38	20090427	흥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7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0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57-5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양화교로 481-71	20090427	행정리를 이용, 마을주변에 바드나무 꽃(양화)이 피어 있고, 금자가 들어가는데 바드나무 꽃의 산이 있다하여 유래

백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	부여사유
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성소로 205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성소로 205	20190503	신규도로명칭
2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1735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1735	20190503	동 지번에 붙임과 상이한 건물 번호
3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치로177번길 15-69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치로177번길 15-69	20190502	2019.05.02일 결실신고

남해군 고시 제2019 - 72호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고시

남해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남 해 군 수

I. 세입·세출결산

1. 총 괄

(단위 : 원)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잉여금
합 계	589,296,924,120	593,667,940,092	389,056,294,162	204,611,645,930
일반회계	495,000,067,510	499,199,336,784	355,987,735,693	143,211,601,091
특별회계	94,296,856,610	94,468,603,308	33,068,558,469	61,400,044,839
상수도특별회계	15,725,371,550	16,092,280,108	15,249,432,810	842,847,298
의료급여기금	659,169,000	657,238,189	574,687,917	82,550,272
자활및생활안정기금	2,155,270,000	2,174,083,129	30,000,000	2,144,083,12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64,522,000	760,941,028	318,549,770	442,391,258
환경기초시설	30,928,214,690	30,717,372,645	16,366,274,572	14,351,098,07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574,518,370	576,896,740	529,613,400	47,283,340
청사건립	43,489,791,000	43,489,791,469	0	43,489,791,469

2. 세입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 계	589,296,924,120	595,642,181,580	593,667,940,092	1,525,824,103
일반회계	495,000,067,510	501,112,047,812	499,199,336,784	1,464,293,643
특별회계	94,296,856,610	94,530,133,768	94,468,603,308	61,530,460
상 수 도	15,725,371,550	16,131,939,038	16,092,280,108	39,658,930
의료급여기금	659,169,000	657,238,189	657,238,189	0
자활및생활안정기금	2,155,270,000	2,174,083,129	2,174,083,129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64,522,000	760,941,028	760,941,028	0
환경기초시설	30,928,214,690	30,739,244,175	30,717,372,645	21,871,53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574,518,370	576,896,740	576,896,740	0
청사건립	43,489,791,000	43,489,791,469	43,489,791,469	0

3. 세출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589,296,924,120	389,056,294,162	108,598,076,750 (731,742,520)	87,235,715,729
일 반 회 계	495,000,067,510	355,987,735,693	94,566,714,460 (731,742,520)	40,096,103,591
특 별 회 계	94,296,856,610	33,068,558,469	14,031,362,290	47,139,612,138
상 수 도	15,725,371,550	15,249,432,810	237,989,000	237,949,740
의 료 급 여 기 금	659,169,000	574,687,917	0	38,369,310
자활및생활안정기금	2,155,270,000	30,000,000	100,000,000	2,025,270,00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764,522,000	318,549,770	131,113,000	314,859,230
환경기초시설	30,928,214,690	16,366,274,572	13,562,260,290	988,467,888
장기미집행도시계 획시설대지보상	574,518,370	529,613,400	0	44,904,970
청사건립	43,489,791,000	0	0	43,489,791,000

4. 결산상잉여금

(단위 : 원)

회 계 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 조 금 집 행 잔 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107,866,334,230 (731,742,520)	53,646,526,730 (731,742,520)	10,646,892,590	43,572,914,910	4,329,006,565	92,416,305,135
일 반 회 계	93,834,971,940 (731,742,520)	50,554,011,040 (731,742,520)	10,551,516,590	32,729,444,310	4,313,805,695	45,062,823,456
특 별 회 계	14,031,362,290	3,092,515,690	95,376,000	10,843,470,600	15,200,870	47,353,481,679
상 수 도	14,031,362,290	3,092,515,690	95,376,000	10,843,470,600		604,858,298
의 료 급 여 기 금	237,989,000	194,613,000	43,376,000			82,550,272
자 활 및 생 활 안 정 기 금						2,044,083,129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100,000,000	100,000,000			3,989,560	307,288,698
환 경 기 초 시 설	131,113,000	131,113,000			11,211,310	777,626,473
장 기 미 집 행 도 시 계 획 시 대 지 보 상	13,562,260,290	2,666,789,690	52,000,000	10,843,470,600		47,283,340
청 사 건 립						43,489,791,469

II. 예산 이용 · 전용 · 이체사용

- 1. 예산이용 : 없음
- 2. 예산전용

(단위 : 원)

회 계	건 수	예산액	전용금액	
			감 액	증 액
일 반 회 계	15건	897,450,000	470,005,000	470,005,000

3. 예산이체

(단위 : 원)

회 계	건 수	예산액	전용금액	
			감 액	증 액
일 반 회 계	348건	59,405,224,170	59,405,224,170	59,405,224,170

남 해 군 공 보

(8) 제 637 호

2019년 6월 13일

Ⅲ.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회 계	건 수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일반회계	12건	3,090,622,000	1,979,559,900	947,781,840	163,280,260

Ⅳ. 재무제표 결산 요약

(단위 : 원)

연도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운영차액
2018년	2,053,527,735,656	9,252,113,708	2,044,275,621,948	304,041,911,287	373,676,499,066	(69,634,587,779)
2017년	1,983,117,430,333	9,074,656,406	1,974,042,773,927	278,642,190,423	362,548,344,355	(83,906,153,912)
증 감	70,410,305,323	177,457,302	70,232,848,021	25,399,720,864	11,128,154,711	(14,271,566,133)

Ⅴ. 채권 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2,993,500,890	31,437,160	317,293,890	2,707,644,160
일 반 회 계	2,729,660,450	1,437,160	315,833,890	2,415,263,720
기 타 특 별 회 계	263,840,440	30,000,000	1,460,000	292,380,440
자 활 및 생 활 안 정 기 금	77,511,760	30,000,000	1,460,000	106,051,760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186,328,680	0	0	186,328,680

VI. 채무 결산

(단위 : 원)

회계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발생액	당해연도소멸액	당해연도현재액
계	해당 없음			
일반회계	0	0	0	0
특별회계	0	0	0	0
상수도특별회계	0	0	0	0

VII. 성과보고서 요약

(단위 : 개)

구분	성과목표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		성과 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130% 이상)	달성	미달성 (100% 미만)
합계	18	86	205	27	119	59

VIII. 기금 결산

(단위 : 원)

회계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10,253,467,507	737,247,910	335,764,450	10,654,950,967
중소기업육성기금	1,533,025,557	120,890,010	10,174,220	1,643,741,347
재난관리기금	657,461,443	375,961,720	217,209,130	816,214,033
양성평등기금	929,043,270	113,736,480	13,000,000	1,029,779,750
식품진흥기금	51,505,170	14,565,340	24,266,800	41,803,710
마늘명품화기금	7,082,432,067	112,094,360	71,114,300	7,123,412,127

IX.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단위 : 원)

구 분	공 유 재 산		정 수 물 품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534,073,375,549	1,038	8,356,245,402
토 지	14,502천㎡	193,924,370,731		
건 물	132,658㎡	108,282,549,469		
기 타	43,884건	231,866,455,349		

남해군 상하수도사업소 고시 제 2019-1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고시

미FDA 패류생산해역 주변구역 하수처리시설(초양 및 고모·광두)사업 시행을 위하여 「하수도법」 제11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를 인가하고, 「하수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남 해 군 수

남 해 군 공 보

(12) 제 637 호

2019년 6월 13일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2) 사업목적

- 강진만 권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미FDA 패류생산 제7호 지정해역 (5,290ha)으로 방류되어 어업인 소득증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민생활 환경개선 및 공중위생향상, 연안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소규모 마을하수도 신설에 목적이 있음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남해군 이동면 초음리 일원 (초양, 초곡, 고모, 광두마을)
- 면 적 : 초양처리분구 0.191km², 고모·광두처리분구 0.184km²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 시설의 종류 : 하수도시설(하수관로)
- 시설개요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계	초양 처리분구	고모·광두 처리분구	
오수 관로	합계	-	m	8,869	3,344	5,525
	분관	D200mm	m	6,462	3,098	3,364
	압송관	D80mm	m	2,161	-	2,161
		D100mm	m	246	246	-
맨홀	1호맨홀	개소	237	112	125	
배수설비	-	가구	265	135	130	
오수중계펌프장	-	개소	4	1	3	
기존맨홀펌프장개량	-	개소	3	3	-	

5) 예정 하수처리구역 : 초양 및 고모·광두 처리분구 (붙임 참조)

6) 사업시행기간 : 2019. 7. ~ 2021.12 .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8) 기타 관계서류는 남해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055-860-3334)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남 해 군 공 보

2019년 6월 13일

제 637 호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초양 처리분구(이동면 초음리)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1	이동면 초음리	2144-1	천	최태*	도로
2	이동면 초음리	2145-1	천	김정*	도로
3	이동면 초음리	755-2	천	박인*	도로
4	이동면 초음리	2111-1	천	이태*	도로
5	이동면 초음리	2112-1	전	곽창*	도로
6	이동면 초음리	2113-1	전	정봉*	도로
7	이동면 초음리	751-1	전	장선*	도로
8	이동면 초음리	751-3	전	박홍*	도로
9	이동면 초음리	47-2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10	이동면 초음리	2093-1	대	이재*	도로
11	이동면 초음리	47-1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12	이동면 초음리	2116-10	대	하세*	도로
13	이동면 초음리	2119-1	차	하세*	도로
14	이동면 초음리	2128-1	대	하종*	도로
15	이동면 초음리	2127-1	대	하종*	도로
16	이동면 초음리	2092-3	답	이성*	도로
17	이동면 초음리	2086	대	최종*	도로
18	이동면 초음리	2056-3	대	공두*	도로
19	이동면 초음리	2056-1	대	초양마을회	도로
20	이동면 초음리	2046-1	대	임명*	도로
21	이동면 초음리	2047-1	대	손지*	도로
22	이동면 초음리	2052-2	전	김채*	도로
23	이동면 초음리	665-5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24	이동면 초음리	2169-6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25	이동면 초음리	850-1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26	이동면 초음리	2053-1	대	김계*	도로
27	이동면 초음리	2052-1	전	하상*	도로
28	이동면 초음리	2049-1	대	고정*	도로
29	이동면 초음리	2050	대	이은*	도로
30	이동면 초음리	1642	대	현이*	도로
31	이동면 초음리	2045-1	전	이은*	도로
32	이동면 초음리	2023	대	한신*	도로
33	이동면 초음리	2021-3	대	최성*	도로
34	이동면 초음리	2021-2	대	이경*	도로
35	이동면 초음리	2025	대	하종*	도로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36	이동면 초음리	2017	대	박용*	도로
37	이동면 초음리	2018-1	대	이창*	도로
38	이동면 초음리	2018-2	대	이영*	도로
39	이동면 초음리	2014-1	대	이은*	도로
40	이동면 초음리	2011-2	대	이학*	도로
41	이동면 초음리	2010	대	조선*	도로
42	이동면 초음리	1828-1	대	최영*	도로
43	이동면 초음리	1827-1	대	최영*	도로
44	이동면 초음리	1825-1	대	하미* 외 2인	도로
45	이동면 초음리	1824-1	대	하미* 외 2인	도로
46	이동면 초음리	1824-2	대	정중*	도로
47	이동면 초음리	1823-1	대	정연*	도로
48	이동면 초음리	2169-2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49	이동면 초음리	2169-4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50	이동면 초음리	1653	전	정이* 외 1인	도로
51	이동면 초음리	1654	대	최억*	도로
52	이동면 초음리	1659	대	김재*	도로
53	이동면 초음리	1658	대	김효*	도로
54	이동면 초음리	2169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55	남해읍 입현리	610-2	잡	남해군	도로
56	남해읍 입현리	1171-4	차	국(국토교통부)	도로
57	남해읍 입현리	1171	차	사회복지법인남해사랑의집	도로

남 해 군 공 보

2019년 6월 13일

제 637 호 (17)

○ 고모 · 광두 처리분구(이동면 초음리)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1	이동면 초음리	29-9	대	김봉* 외 3인	도로
2	이동면 초음리	39-5	대	박봉*	도로
3	이동면 초음리	565-3	답	이민*	도로
4	이동면 초음리	445-1	대	강영*	도로
5	이동면 초음리	444-1	대	박설*	도로
6	이동면 초음리	446-1	대	정경*	도로
7	이동면 초음리	447-1	대	김안*	도로
8	이동면 초음리	448-1	대	정필*	도로
9	이동면 초음리	435-1	창	김수*	도로
10	이동면 초음리	435-3	답	류월*	도로
11	이동면 초음리	317-1	답	정주*	도로
12	이동면 초음리	207-4	대	이상*	도로
13	이동면 초음리	207-8	대	김정*	도로
14	이동면 초음리	209	대	김정*	도로
15	이동면 초음리	208-4	전	김정*	도로
16	이동면 초음리	210-1	대	정한*	도로
17	이동면 초음리	210-3	대	김치*	도로
18	이동면 초음리	211-2	전	김은*	도로
19	이동면 초음리	210-7	전	김채*	도로
20	이동면 초음리	210-5	전	정현*	도로
21	이동면 초음리	172-3	답	강현*	도로
22	이동면 초음리	168	대	이막*	도로
23	이동면 초음리	171-4	대	정현*	도로
24	이동면 초음리	171-2	전	안귀*	도로
25	이동면 초음리	165-1	대	김정*	도로
26	이동면 초음리	165-2	대	김정*	도로
27	이동면 초음리	164	대	강부*	도로
28	이동면 초음리	147	대	하광*	도로
29	이동면 초음리	148-1	대	정광*	도로
30	이동면 초음리	149-5	전	김구*	도로
31	이동면 초음리	148-2	대	정득*	도로
32	이동면 초음리	149-1	대	정득*	도로
33	이동면 초음리	164-2	대	하순*	도로
34	이동면 초음리	164-3	대	하순*	도로
35	이동면 초음리	150-1	대	이태*	도로

NO.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실제현황
36	이동면 초음리	156-1	대	이충*	도로
37	이동면 초음리	156	전	김궁*	도로
38	이동면 초음리	157	전	김용*	도로
39	이동면 초음리	산5-1	임	정종*	도로
40	이동면 초음리	산7-1	임	정화*	도로
41	이동면 초음리	산8-1	임	김수*	도로
42	이동면 초음리	209-3	임	정종*	도로
43	이동면 초음리	산10	묘	최길*	도로
44	이동면 초음리	산26	임	정성*	도로
45	이동면 초음리	산22-5	임	송상*	도로
46	이동면 초음리	538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47	이동면 초음리	213-2	전	김재*	도로
48	이동면 초음리	221-1	대	김재*	도로
49	이동면 초음리	215-5	대	구경* 외 2인	도로
50	이동면 초음리	229-2	답	김채*	도로
51	이동면 초음리	217	대	신재*	도로
52	이동면 초음리	226-7	대	박봉*	도로
53	이동면 초음리	226-9	대	김평*	도로
54	이동면 초음리	222-1	대	김재*	도로
55	이동면 초음리	222-2	전	김영* 외 1인	도로
56	이동면 초음리	209-2	임	김정*	도로
57	이동면 초음리	37-2	제	국(농림축산식품부)	도로
58	이동면 초음리	37	답	남해군	도로
59	이동면 초음리	313-1	임	강정*	도로
60	이동면 초음리	438-4	대	하영*	도로
61	이동면 초음리	438-5	창	광두마을회	도로
62	이동면 초음리	572-3	대	정민*	도로
63	이동면 초음리	421-12	답	김춘*	도로
64	이동면 초음리	572-2	대	정영*	도로
65	이동면 초음리	571-1	대	하영*	도로
66	이동면 초음리	570-1	대	이경*	도로
67	이동면 초음리	40-3	대	김옥*	도로
68	이동면 초음리	41-1	대	정영*	도로
69	이동면 초음리	402-1	대	이형*	도로
70	이동면 초음리	519	답	이충*	도로
71	이동면 초음리	47-2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배수로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54호

남해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9년 6월 13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별표 1] 공통

단위사무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군수
		담당자		담당관 · 과장	국장	부군수	
		실무자	팀장				
1	생략						
2	가.~바. 생략						
	사. 예산의 변경사용 · 전용 · 이용 · 이체 요구서 작성	기안		○			
	아.~차. 생략						
	카. 지방보조금 재배정 요구서 작성	기안		○			
3	국도비 등 보조금 예산 신청						
	가. 2억원 이상	기안					○
	나.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기안					○
	다. 5천만원 미만	기안			○		
4	국도비 등 보조금 교부 신청	기안		○			
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업변경						
	가. 5천만원 이상	기안					○
	나.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기안					○
	다. 2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기안			○		
	라. 2천만원 미만	기안		○			
	마. 지방보조금 예산의 경미한 사업 변경(예산 10% 이내)	기안		○			
6	지방보조금 교부, 교부결정통지, 정산 및 관리	기안		○			
7	예산의 변경사용 결정	기안			○		
8	이하 생략						

남 해 군 공 보

(22) 제 637 호

2019년 6월 13일

[별표 1] 본청사무전결 처리 사항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단위사무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군수
		담당자		담당관 · 과장	국장	부군수	
		실무자	팀장				
38	예산배정						
	가.~라. 생략						
	마. 지방보조금 재배정 결정 및 통지	기안		○			
39	예산의 전용·이용·이체						
	가. 예산의 변경사용·전용·이용·이체요구서 심사	기안		○			
	나. ~다. 생략						

[별표 4] 읍면 전결대상사무

단위사무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읍면장
		담당자		부읍면장	
		실무자	팀장		
	1. ~ 72 생략				
73	재배정 지방 보조금의 집행 등				
	가. 지방보조금 신청 및 접수	기안			○
	나. 지방보조금(변경) 결정 및 교부 통지	기안			○
	다. 추진사항 점검.지도.관리 및 취소	기안			○
	라. 지방보조금 정산	기안			○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9 - 779호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5일

남 해 군 수

1. 공사의 개요

- 가. 공 사 명 :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나. 공사위치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일원
- 다. 공사내용 : 사면정비 L=728m
- 라. 공사기간 : 2019. 1. 1. ~ 2021.12. 31.
- 마. 공사시행자 : 남해군수

2.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 별첨 및 열람장소에 비치

- 가. 토 지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1255-1번지 외 20필지 / 12,883㎡
- 나. 지장물건 :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

3.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 가. 열람기간 : 2019. 6. 5. ~ 2019. 6. 19.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 다. 이의신청 : 보상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

4.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시기 : 2019년 6월~(추후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감정평가 실시 후 통보)
- 나. 보상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용지 등의 협의 취득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및 지장물건 철거 또는 이전 완료 후 계좌입금
- 다. 보상금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보상금 산정
 - 1) 평가기관 : 2인 감정평가업자 선정(추천시 3인)
 - 2) 산정금액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은행 계좌로 입금

보상계획 열람공고⇒감정평가⇒보상금 산정⇒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 통지)
 ⇒협의(계약체결)⇒보상금 지급⇒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공탁(협의 불성립시)
 ⇒이의재결 또는 소송

마.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바.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사.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가. 열람결과 소유권·기타 권리관계 등이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상기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다.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 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방재복구팀(☎055-860-329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편입예정 토지조서 1부.

편 입 용 지 조 서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시군읍면동리				대장	면적	참여	성명	주소	명칭(성명)	주소	권리내용		
1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1255-1	임야	109.0	51.0	58.0	정성0	상주면 양아리					미등기
2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1256-1	전	1,101.0	796.0	305.0	정차0	상주면 양아리					
3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1257-1	전	1,157.0	568.0	589.0	정성0	상주면 양아리					미등기
4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1261-1	전	1,134.0	127.0	1,007.0	정용0	남해읍 아산리					
5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1263-1	전	737.0	252.0	485.0	정용0	부산광역시 서구					
6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1264-1	전	1,540.0	178.0	1,362.0	정시0	상주면 양아리					
7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1266-1	전	122.0	14.0	108.0	정달0	상주면 양아리					
8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1272-1	전	225.0	54.0	171.0	정근0	부산광역시 서구					
9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1276-1	전	893.0	345.0	548.0	정영0	이동면 석평리					
10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1277-3	전	840.0	202.0	638.0	정경0	부산광역시 사하구					
11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265-7	임야	17,785.0	153.0	17,632.0	박종0 외 1	상주면 양아리					
12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265-8	임야	7,306.0	1,180.0	6,126.0	김정0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3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265-10	임야	12,297.0	2,949.0	9,348.0	신순0	상주면 양아리			남해신용협동조합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95번길 5	근저당
14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266-2	임야	9,684.0	2,273.0	7,411.0	정시0	상주면 양아리					
15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267-4	임야	2,661.0	652.0	2,009.0	광효0	사천시 정동면 동계2길					
16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267-6	임야	798.0	158.0	640.0	정신0	부산광역시 영도구					
17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269-2	임야	3,471.0	379.0	3,092.0	이상0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18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270-1	임야	3,471.0	676.0	2,795.0	김도0 외 2	상주면 양아리					
19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271-2	임야	3,967.0	1,641.0	2,326.0	정대0	미조면 미조로					
20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272-1	임야	14,678.0	183.0	14,495.0	정차0	상주면 양아리					
21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272-2	임야	14,678.0	52.0	14,626.0	정차0	상주면 양아리					
합 계					98,654.0	12,883.0	85,771.0							

남해군 공고 제2019 - 784호

**도시계획도로(소로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및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노인복지관~운동장)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공람 공고**

2019년 6월 3일

남 해 군 수

남 해 군 공 보

(28) 제 637 호

2019년 6월 13일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구분	종류	위치	비고
도시계획도로 (소로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남해군계획시설사업 (교통시설 : 도로)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서변리 일원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노인복지관~ 운동장) 개설공사	남해군계획시설사업 (교통시설 : 도로)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서변리 일원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규 모				결 정(M)		금 회(M)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m)	폭	연장	폭	연장	
도시계획도로 (소로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소로	2	37	8	8	237	8	71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효자문~ 들물횃집) 개설공사	중로	3	1	12	12	1,248	12	194	

3.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남해군수(도시건축과)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4. 사업기간

구분	사업기간		비 고
	당초	변경	
도시계획도로 (소로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착공일로부터 12개월	2018.9.27. ~ 2020.2.29.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노인복지관~운동장) 개설공사	착공일로부터 12개월	2018.10.2. ~ 2020.2.29.	

5. 공람기간 : 공고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6. 실시계획변경인가 사유

- 소유권 변동사항 정정 및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1 참조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5)에 비치】

붙임 :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1부.

2. 의견서 1부. 끝.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조서

공사명 : 도시계획도로(소로 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비 고
	읍·리	지번				주 소	성 명		
1	남해읍 아산리	419-7	대	18	18		남해군	-	
2	남해읍 아산리	419-14	대	3	3		남해군	-	
3	남해읍 아산리	1433	도	1,601	98		국(국토교통부)	-	
4	남해읍 서변리	323-1	전	86	79		남해군	-	
5	남해읍 아산리	406-4	전	81	60		남해군	-	
6	남해읍 아산리	406-2	도	33	30		남해군	-	
7	남해읍 아산리	405-1	대	13	7		남해군	-	
8	남해읍 서변리	311-1	전	3	3		남해군	-	
9	남해읍 서변리	311-2	도	43	42		남해군	-	
10	남해읍 서변리	311-10	대	8	8		남해군	-	
11	남해읍 서변리	324-1	전	7	7	남해읍 아산리	김O금	-	
12	남해읍 서변리	324-2	도	99	28	남해읍 아산리	김O금	-	
13	남해읍 서변리	323-2	도	69	44		남해군	-	
14	남해읍 서변리	311-11	대	3	3		남해군	-	

남 해 군 공 보

(30) 제 637 호

2019년 6월 13일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일 련 번 호	소 재 지		물건 종류	규격	편입 면적 (㎡)	단 위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읍· 리	지번 (당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1	남해읍 서변리	311-3	주택	블럭스레트	69	㎡	남해읍 서변리	이O봉	대구 달서구	대구신 용보증 재단	가압류	
			가추1	벽체이용 스레트	6	㎡						
			가추2	선라이트	12	㎡						
			가추3	목조스레트	18	㎡						
			화장실등	블럭스레트	15.75	㎡						
			아래채	블럭스레트	40.5	㎡						
			보일러실	블럭스레트	3	㎡						
			물탱크	철재지지대 포함	1	식						
			대문	새시조	1	식						
			바닥포장	콘크리트	32	㎡						
			아궁이		1	식						
			석류	R25	1	주						
			화단	2*5	1	식						
								대구 동구	이O숙	가압류		
								서울 종로구	서울보 증보험 주식회 사	가압류		
								대구 수성구	이O을	근저당		
								대구 수성구	정O수	근저당		
								서울 강남구	메가주 식회사	근저당		

2. 공사명 : 도시계획도로(중로 3-1호, 노인복지관~운동장) 개설공사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 련 번 호	소 재 지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비 고
	읍·리	지번				주 소	성 명		
1	남해읍 아산리	355-2	도	5,248	117		남해군	-	
2	남해읍 아산리	409-7	답	379	379		남해군	-	
3	남해읍 아산리	414-12	답	40	40		남해군	-	
4	남해읍 아산리	1433	도	1,601	63		국(국토교통부)	-	
5	남해읍 아산리	419-8	답	27	27		남해군	-	
6	남해읍 아산리	419-11	대	92	92		남해군	-	
7	남해읍 아산리	419-9	대	11	11		남해군	-	
8	남해읍 아산리	419-13	대	167	167		남해군	-	
9	남해읍 아산리	419-12	대	20	20		남해군	-	
10	남해읍 아산리	419-10	대	129	129	부산광역시 동래구	강O희	근저당	
11	남해읍 아산리	419-3	도	10	4		남해군	-	
12	남해읍 서면리	324-2	도	99	35	남해읍 아산리	김O금	-	
13	남해읍 서면리	324-6	대	227	227		남해군	-	
14	남해읍 서면리	322-14	전	209	209		남해군	-	
15	남해읍 서면리	326-1	전	269	269		남해군	-	
16	남해읍 서면리	327-2	전	243	243		남해군	-	
17	남해읍 서면리	329-6	대	2	2		남해군	-	
18	남해읍 서면리	329-7	대	10	10		남해군	-	
19	남해읍 서면리	329-8	전	292	283		남해군	-	
20	남해읍 서면리	329-3	전	41	10		남해군	-	
21	남해읍 서면리	329-5	대	59	37		남해군	-	
22	남해읍 서면리	328-2	전	174	165		남해군	-	
23	남해읍 서면리	330-1	전	283	51		남해군	-	

남 해 군 공 보

(32) 제 637 호

2019년 6월 13일

○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조서

일 련 번 호	소 재 지		물건 종류	규격	편입 면적 (㎡)	단 위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읍·리	지번 (당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1	남해읍 아산리	419-10	주택 (공가)	블럭스레트	58	㎡	부산광역시 동래구	강O회	남해읍 북면리	남해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부역	블럭슬라브	6.75	㎡			김해시 구산동	주식회사 세우글로벌	근저당	
			담장	블럭조	30	㎡						
			감나무	R20	1	주						
			은행나무	R100	1	주						
			종려나무	R20	1	주						
			무궁화	R100	1	주						
			퀴똥나무	R12	1	주						
			파라칸시스	R10	1	주						
동백나무	R2	15	주									

남해군 공고 제2019 - 794호

**도시계획도로(소로2-14호,파크에비뉴~정원패밀리)개설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소로2-14호, 파크에비뉴~정원패밀리)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5일

남 해 군 수

1. 공사의 개요

- 가. 공 사 명 : 도시계획도로(소로2-14호, 파크에비뉴~정원패밀리)개설공사
- 나. 공사위치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265-10번지 일원
- 다. 공사내용 : 도로개설 L=250m, B=8m
- 라. 공사기간 : 2019. 1. ~ 2020.12.
- 마. 공사시행자 : 남해군수

2.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 별첨 및 열람장소에 비치

- 가. 토 지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265-10번지 외 17필지
- 나. 지장물건 :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

3.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 가. 열람기간 : 2019. 6. 5. ~ 2019. 6. 19.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 다. 이의신청 : 보상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

4.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시기 : 2019년 7월~(추후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감정평가 실시 후 통보)
- 나. 보상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용지 등의 협의 취득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및 지장물건 철거 또는 이전 완료 후 계좌입금

다. 보상금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보상금 산정

- 1) 평가기관 : 2인 감정평가업자 선정(추천시 3인)
- 2) 산정금액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은행 계좌로 입금

보상계획 열람공고⇒감정평가⇒보상금 산정⇒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 통지)
 ⇒협의(계약체결)⇒보상금 지급⇒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공탁(협의 불성립시)
 ⇒이의재결 또는 소송

마.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바.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사.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가. 열람결과 소유권·기타 권리관계 등이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상기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다.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055-860-34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편입 토지조서 1부.

남 해 군 공 보

(36) 제 637 호

2019년 6월 13일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 번	소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비 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합계				1,951	1,924						
1	북변리	265-10	잡	6	6	최O심	남해읍 북변리	미송새마을 금고	남해군 미조면	근저당 지상권	2/ 3
						서O수	남해읍 북변리				1/ 3
2	북변리	266-16	답	212	212	최O배	하남시 망월동	새남해 새마을금고	남해군 이동면	근저당	
3	북변리	266-15	답	162	162	서O수	남해읍 북변리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 중구	근저당	
4	북변리	311-2	답	197	197	수광 종합건설 주식회사	진주시 상평동	하동군수 산업협동 조합	하동군 금남면	지상권 근저당	
5	북변리	272-1	답	176	176	박O득	남해읍 북변리				
6	북변리	273-3	답	32	32	하O호	남해군 남면				
7	북변리	310-4	답	60	60	박O주	남해군 서면				
8	북변리	308-3	대	8	2	남해군					
9	북변리	308-5	대	109	109	박O심	남해군 남면				
10	북변리	308-7	대	175	175	서O영	남해군 설천면				
						정O현	남해군 설천면				
11	북변리	306-18	답	162	162	박O수	남해읍 북변리				
12	북변리	304-16	대	66	66	박O봉	남해읍 북변리				
13	북변리	304-14	답	36	36	임O순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354길				
14	북변리	304-18	대	54	50	남해군					

15	북변리	305-1	답	10	10	박O경	남해읍 북변리				
16	북변리	472-1	답	191	191	박O경	남해읍 북변리				
17	북변리	473-5	답	183	183	박O옥	서울 동작구 사당로 2가길	새남해농업 협동조합	남해군 고현면	근저당	
18	북변리	474-4	답	112	95	최O례	남해읍 북변리				

남해군 공고 제 2019 - 795호

공시송달 공고

「덕신소하천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협의요청의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협의가 불가하여 동법 시행령 제 4조 및 제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남 해 군 수

1. 사 업 명 : 덕신소하천 정비공사
2. 위 치 :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212-3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 남해군수
4. 공고기간 : 2019. 6. 7. ~ 2019. 6. 21.(14일간)
5. 공고내용
 - 협의기간 : 2019. 6. 7. ~ 2019. 8. 30(금)까지
 - 협의장소 :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055-860-3494)
 - 보상방법 :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약입금
 - 위 협의기간 중 미 협의 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
 - 보상협의 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보상금 수령용, 이전등기용), 주민등록 초본1부(전주소 포함),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기타관계서류
 - 지참물 : 인감도장, 신분증
6. 공시송달 대상자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m ²)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 관계	
1	설천면 덕신리	1112-1	1112-2	도	100	50	설천면 덕신리 1089	박을용				
2	"	1117-37		도	20	20	설천면 덕신리 576	김덕완				
3	"	1117-33		도	23	23						
4	"	1117-34		도	50	50						

7. 기타사항 및 문의처

- 보상협의 요청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남해군 안전총괄과 (☎055-860-349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19 - 801호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노인복지관~운동장)

개설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노인복지관~운동장)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7일

남 해 군 수

1. 공사의 개요

- 가. 공 사 명 :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노인복지관~운동장)개설공사
- 나. 공사위치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서변리 일원
- 다. 공사내용 : 도로개설 L=194m, B=12m
- 라. 공사기간 : 2018. 10. ~ 2019.10.
- 마. 공사시행자 : 남해군수

2.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 별첨 및 열람장소에 비치

- 가. 토 지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419-10번지 외 22필지
- 나. 지장물건 :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

3.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 가. 열람기간 : 2019. 6. 7. ~ 2019. 6. 21.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 다. 이의신청 : 보상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

4.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시기 : 2019년 7월~(추후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감정평가 실시 후 통보)
- 나. 보상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용지 등의 협의 취득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및 지장물건 철거 또는 이전 완료 후 계좌입금

다. 보상금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보상금 산정

- 1) 평가기관 : 2인 감정평가업자 선정(추천시 3인)
- 2) 산정금액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은행 계좌로 입금

보상계획 열람공고⇒감정평가⇒보상금 산정⇒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 통지)
⇒협의(계약체결)⇒보상금 지급⇒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공탁(협의 불성립시)
⇒이의재결 또는 소송

마.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바.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사.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가. 열람결과 소유권·기타 권리관계 등이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상기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다.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055-860-34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편입 토지조서 1부.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 련 번 호	소 재 지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비 고
	읍리	지번				주 소	성 명		
1	남해읍 아산리	355-2	도	5,248	117		남해군	-	
2	남해읍 아산리	409-7	답	379	379		남해군	-	
3	남해읍 아산리	414-12	답	40	40		남해군	-	
4	남해읍 아산리	1433	도	1,601	63		국(국토교통부)	-	
5	남해읍 아산리	419-8	답	27	27		남해군	-	
6	남해읍 아산리	419-11	대	92	92		남해군	-	
7	남해읍 아산리	419-9	대	11	11		남해군	-	
8	남해읍 아산리	419-13	대	167	167		남해군	-	
9	남해읍 아산리	419-12	대	20	20		남해군	-	
10	남해읍 아산리	419-10	대	129	129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47번길	강0희	근저당	
11	남해읍 아산리	419-3	도	10	4		남해군	-	
12	남해읍 서변리	324-2	도	99	35	남해읍 아산리	김0금	-	
13	남해읍 서변리	324-6	대	227	227		남해군	-	
14	남해읍 서변리	322-14	전	209	209		남해군	-	
15	남해읍 서변리	326-1	전	269	269		남해군	-	
16	남해읍 서변리	327-2	전	243	243		남해군	-	
17	남해읍 서변리	329-6	대	2	2		남해군	-	
18	남해읍 서변리	329-7	대	10	10		남해군	-	
19	남해읍 서변리	329-8	전	292	283		남해군	-	
20	남해읍 서변리	329-3	전	41	10		남해군	-	
21	남해읍 서변리	329-5	대	59	37		남해군	-	
22	남해읍 서변리	328-2	전	174	165		남해군	-	
23	남해읍 서변리	330-1	전	283	51		남해군	-	

남해군 공고 제2019-809호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가. 포항·경주 지진, 제천·밀양 화재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군민들의 불안감 급증
 - 나. 재난 및 사고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따른 손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반 마련
3. 주요내용
 - 가. 가입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라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남해군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 「출입국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남해군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나. 보장범위와 보상한도액

- 보험 가능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 가입 내용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

다. 피해신고 및 조사 : 재난의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보험기관에 그 피해를 직접 신고
 라. 보험금 지급 제외

-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조례에 규정된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의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 경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9년 6월 25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경제산업국 안전총괄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425, 팩스 055-860-372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경제산업국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전화 055-860-34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또는 각종 사고로 인적 피해를 입은 남해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가입하는 남해군 군민안전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 남해군민을 피보험자로 남해군수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군수와 군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피보험자) 군민안전보험의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남해군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남해군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장 가능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 가입 내용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군수는 제4조에서 정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따른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재난의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은 보험기관에 그 피해를 직접 신고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제출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사고 발생 당시 제3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9 - 812호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누락분)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누락분)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10일

남 해 군 수

1. 공사의 개요

- 가. 공 사 명 :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나. 공사위치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일원
- 다. 공사내용 : 사면정비 L=728m
- 라. 공사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마. 공사시행자 : 남해군수

2.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 별첨 및 열람장소에 비치

- 가. 토 지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1255-1번지 외 21필지 / 13,098㎡
- 나. 지장물건 :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

3.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 가. 열람기간 : 2019. 6. 11. ~ 2019. 6. 26.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 다. 이의신청 : 보상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2019년 6월~(추후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감정평가 실시 후 통보)

나. 보상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용지 등의 협의 취득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및 지장물건 철거 또는 이전 완료 후 계좌입금

다. 보상금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보상금 산정

1) 평가기관 : 2인 감정평가업자 선정(추천시 3인)

2) 산정금액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은행 계좌로 입금

보상계획 열람공고⇒감정평가⇒보상금 산정⇒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 통지)
⇒협의(계약체결)⇒보상금 지급⇒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공탁(협의 불성립시)
⇒이의재결 또는 소송

마.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바.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사.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가. 열람결과 소유권·기타 권리관계 등이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상기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다.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방재복구팀(☎055-860-329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편입예정 토지조서 1부.

편 입 용 지 조 서(누락분)

소량지구 금강사지 봉곡위험지역 정비공사

구분	소재지 시군읍면동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대장	결입	잔여	성명	주소	명칭(성명)	주소	관리내용		
1	남해군 상주면 양어리	1269	전	215	215	-	정시0	상주면 양어리					
	합계			215.0	215.0	-							

남해군 공고 제2019 - 814호

남해군관리계획(남해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공람·공고

남해군관리계획(남해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13일

남 해 군 수

1. 건 명 : 남해군관리계획(남해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공람·공고

2. 주요 결정(변경) 입안 내용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IV	48,893.0	-	48,893.0	IV- 1	-	-	7,271.0	감)7,271.0	-	
				IV- 2	-	-	15,481.0	감)15,481.0	-	
				IV- 3	IV- 1	산340-9번지 일원	4,884.0	감)2,123.0	2,761.0	
				IV- 4	IV- 2	산334-7번지 일원	488.0	-	488.0	
				IV- 5	IV- 3	산336번지 일원	16,221.0	증)24,875.0	41,096.0	
				IV- 6	IV- 4	산334-7번지 일원	4,548.0	-	4,548.0	

나.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붙임

3. 관계도서열람 및 의견 제출장소: 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14)

4. 공람 · 공고기간 : 신문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방법

가. 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1) 남해군 도시건축과에서 열람 후 서면으로 제출
 -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붙임>

■ 남해군관리계획(남해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7	체육 시설	골프장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1361번지 일원	1,331,102.0	-	1,331,102.0	남해군고시 제2010-32호 (2010.5.31)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09,182.5	-	609,182.5				609,182.5	-	609,182.5	
-	I	99,995.0	-	99,995.0	I-1	I-1	산235-18번지 일원	2,357.0	-	2,357.0	
					I-2	I-2	산235-18번지 일원	3,309.0	-	3,309.0	
					I-3	I-3	산235-18번지 일원	2,329.0	-	2,329.0	
					I-4	I-4	산235-18번지 일원	5,865.0	-	5,865.0	
					I-5	I-5	산235-18번지 일원	11,111.0	-	11,111.0	
					I-6	I-6	산235-19번지 일원	6,781.0	-	6,781.0	
					I-7	I-7	산235-19번지 일원	7,125.0	-	7,125.0	
					I-8	I-8	산235-14번지 일원	1,225.0	-	1,225.0	
					I-9	I-9	산235-18번지 일원	2,114.0	-	2,114.0	
					I-10	I-10	산235-11번지 일원	9,822.0	-	9,822.0	
					I-11	I-11	산235-18번지 일원	6,520.0	-	6,520.0	
					I-12	I-12	산235-19번지 일원	2,759.0	-	2,759.0	
					I-13	I-13	산235-19번지 일원	10,619.0	-	10,619.0	
					I-14	I-14	산235-18번지 일원	19,777.0	-	19,777.0	
					I-15	I-15	산235-20번지 일원	8,282.0	-	8,282.0	
-	II	75,057.0	-	75,057.0	II-1	II-1	산243번지 일원	4,726.0	-	4,726.0	
					II-2	II-2	산243번지 일원	6,454.0	-	6,454.0	
					II-3	II-3	산243번지 일원	5,903.0	-	5,903.0	
					II-4	II-4	산243번지 일원	3,382.0	-	3,382.0	
					II-5	II-5	산243번지 일원	2,331.0	-	2,331.0	
					II-6	II-6	산243번지 일원	2,610.0	-	2,610.0	
					II-7	II-7	산243번지 일원	1,466.0	-	1,466.0	
					II-8	II-8	산243번지 일원	7,739.0	-	7,739.0	
					II-9	II-9	산243번지 일원	1,715.0	-	1,715.0	
					II-10	II-10	산243번지 일원	2,756.0	-	2,756.0	
					II-11	II-11	산243번지 일원	35,975.0	-	35,975.0	
-	V	73,163.8	-	73,163.8	V-1	V-1	산243번지 일원	9,256.0	-	9,256.0	
					V-2	V-2	산243번지 일원	7,257.0	-	7,257.0	
					V-3	V-3	산243번지 일원	6,771.0	-	6,771.0	
					V-4	V-4	산243번지 일원	5,462.0	-	5,462.0	
					V-5	V-5	산243번지 일원	7,878.0	-	7,878.0	
					V-6	V-6	산243번지 일원	206.0	-	206.0	
					V-7	V-7	산243번지 일원	458.0	-	458.0	
					V-8	V-8	산243번지 일원	467.0	-	467.0	
					V-9	V-9	산243번지 일원	1,165.0	-	1,165.0	
					V-10	V-10	산243번지 일원	7,178.8	-	7,178.8	
					V-11	V-11	산243번지 일원	2,363.0	-	2,363.0	
					V-12	V-12	산243번지 일원	3,035.0	-	3,035.0	
					V-13	V-13	산243번지 일원	21,667.0	-	21,667.0	
-	VI	17,423.0	-	17,423.0	VI-1	VI-1	산243번지 일원	3,709.0	-	3,709.0	
					VI-2	VI-2	산243번지 일원	3,809.0	-	3,809.0	
					VI-3	VI-3	산243번지 일원	239.0	-	239.0	
					VI-4	VI-4	산243번지 일원	3,162.0	-	3,162.0	
					VI-5	VI-5	산243번지 일원	6,504.0	-	6,504.0	

남해군공보

(56) 제 637 호

2019년 6월 13일

노면면적(㎡)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	III	32,293.7	-	32,293.7	III- 1	III- 1	1332번지	22,909.7	-	22,909.7	
					III- 2	III- 2	1332번지	9,384.0	-	9,384.0	
-	IV	48,893.0	-	48,893.0	IV- 1	-	-	7,271.0	감)7,271.0	-	
					IV- 2	-	-	15,481.0	감)15,481.0	-	
					IV- 3	IV- 1	산340-9번지 일원	4,884.0	감)2,123.0	2,761.0	
					IV- 4	IV- 2	산334-7번지 일원	488.0	-	488.0	
					IV- 5	IV- 3	산336번지 일원	16,221.0	증)24,875.0	41,096.0	
					IV- 6	IV- 4	산334-7번지 일원	4,548.0	-	4,548.0	
-	VII	216,962.0	-	216,962.0	VII- 1	VII- 1	산340-6번지 일원	10,686.0	-	10,686.0	
					VII- 2	VII- 2	산340-6번지 일원	9,031.0	-	9,031.0	
					VII- 3	VII- 3	산340-10번지 일원	10,512.0	-	10,512.0	
					VII- 4	VII- 4	산340-10번지 일원	2,207.0	-	2,207.0	
					VII- 5	VII- 5	산340-9번지 일원	5,814.0	-	5,814.0	
					VII- 6	VII- 6	산343-4번지 일원	5,335.0	-	5,335.0	
					VII- 7	VII- 7	산343-4번지 일원	10,611.0	-	10,611.0	
					VII- 8	VII- 8	산343-2번지 일원	5,307.0	-	5,307.0	
					VII- 9	VII- 9	산343-3번지 일원	1,928.0	-	1,928.0	
					VII-10	VII-10	산343-3번지 일원	2,565.0	-	2,565.0	
					VII-11	VII-11	산343-2번지 일원	12,968.0	-	12,968.0	
					VII-12	VII-12	산343-4번지 일원	2,670.0	-	2,670.0	
					VII-13	VII-13	산345번지 일원	888.0	-	888.0	
					VII-14	VII-14	산340번지 일원	5,158.0	-	5,158.0	
					VII-15	VII-15	산340-8번지 일원	6,714.0	-	6,714.0	
					VII-16	VII-16	산340-16번지 일원	3,722.0	-	3,722.0	
					VII-17	VII-17	산343-4번지 일원	12,033.0	-	12,033.0	
					VII-18	VII-18	산340-2번지 일원	21,659.0	-	21,659.0	
					VII-19	VII-19	산343-2번지 일원	933.0	-	933.0	
					VII-20	VII-20	산343-2번지 일원	3,752.0	-	3,752.0	
					VII-21	VII-21	산340번지 일원	35.0	-	35.0	
					VII-22	VII-22	산340번지 일원	36.0	-	36.0	
					VII-23	VII-23	산340번지 일원	376.0	-	376.0	
					VII-24	VII-24	산343-1번지 일원	61,974.0	-	61,974.0	
					VII-25	VII-25	산343-1번지 일원	20,048.0	-	20,048.0	
-	VIII	45,395.0	-	45,395.0	VIII- 1	VIII- 1	산343-3번지 일원	10,419.0	-	10,419.0	
					VIII- 2	VIII- 2	산343-3번지 일원	11,353.0	-	11,353.0	
					VIII- 3	VIII- 3	산343-3번지 일원	2,129.0	-	2,129.0	
					VIII- 4	VIII- 4	산343-3번지 일원	1,449.0	-	1,449.0	
					VIII- 5	VIII- 5	산343-3번지 일원	1,136.0	-	1,136.0	
					VIII- 6	VIII- 6	산343-3번지 일원	2,764.0	-	2,764.0	
					VIII- 7	VIII- 7	산343-3번지 일원	16,145.0	-	16,145.0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획지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내 용
	기정	변경			
-	I-1	I-1	진동리 산235-18번지 일원	지정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
	I-2	I-2	진동리 산235-18번지 일원		
	I-3	I-3	진동리 산235-18번지 일원		
	I-4	I-4	진동리 산235-18번지 일원		
	I-5	I-5	진동리 산235-18번지 일원		
	I-6	I-6	진동리 산235-19번지 일원		
	II-1	II-1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용도 권장 용도	-
	II-2	II-2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II-3	II-3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II-4	II-4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V-1	V-1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외 의 용도
	V-2	V-2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V-3	V-3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V-4	V-4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VI-1	VI-1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VI-2	VI-2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III-1	III-1	진동리 1332번지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 이하
	IV-1	-	-		
	IV-2	-	-		
	VII-1	VII-1	진동리 산340-6번지 일원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이하
VII-2	VII-2	진동리 산340-6번지 일원			
VII-3	VII-3	진동리 산340-10번지 일원			
VII-4	VII-4	진동리 산340-10번지 일원			
VII-5	VII-5	진동리 산340-9번지 일원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층 이하 	
VII-6	VII-6	진동리 산343-4번지 일원			
VII-7	VII-7	진동리 산343-4번지 일원			
VII-8	VII-8	진동리 산343-2번지 일원			
VII-9	VII-9	진동리 산343-3번지 일원			
VII-10	VII-10	진동리 산343-3번지 일원			
VIII-1	VIII-1	진동리 산343-3번지 일원			
VIII-2	VIII-2	진동리 산343-3번지 일원			

남 해 군 공 보

(58) 제 637 호

2019년 6월 13일

도면 번호	획지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	I - 7	I - 7	진동리 산235-19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 도로
	II - 5	II - 5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권장용도	-
	V - 5	V - 5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 의 용도
	VI - 3	VI - 3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IV - 3	IV - 1	진동리 산340-9번지 일원		건폐율	-
	VII - 11	VII - 11	진동리 산343-2번지 일원		용적률	-
	VIII - 3	VIII - 3	진동리 산343-3번지 일원		높이	-
-	I - 8	I - 8	진동리 산235-14번지 일원	용도	지정 용도	■ 조성녹지
	I - 9	I - 9	진동리 산235-18번지 일원			
	I - 10	I - 10	진동리 산235-11번지 일원			
	I - 11	I - 11	진동리 산235-18번지 일원			
	I - 12	I - 12	진동리 산235-19번지 일원			
	I - 13	I - 13	진동리 산235-19번지 일원			
	II - 6	II - 6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권장 용도	-
	II - 7	II - 7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II - 8	II - 8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II - 9	II - 9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V - 6	V - 6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외 의 용도
	V - 7	V - 7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V - 8	V - 8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V - 9	V - 9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V - 10	V - 10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V - 11	V - 11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VI - 4	VI - 4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IV - 4	IV - 2	진동리 산334-7번지 일원		건폐율	-
	IV - 5	IV - 3	진동리 산336번지 일원			
	VII - 12	VII - 12	진동리 산343-4번지 일원			
VII - 13	VII - 13	진동리 산345번지 일원				
VII - 14	VII - 14	진동리 산340번지 일원		용적률	-	
VII - 15	VII - 15	진동리 산340-8번지 일원				
VII - 16	VII - 16	진동리 산340-16번지 일원				
VII - 17	VII - 17	진동리 산343-4번지 일원				
VII - 18	VII - 18	진동리 산340-2번지 일원				
VII - 19	VII - 19	진동리 산343-2번지 일원		높이	-	
VII - 20	VII - 20	진동리 산343-2번지 일원				
VIII - 4	VIII - 4	진동리 산343-3번지 일원				
VIII - 5	VIII - 5	진동리 산343-3번지 일원				
VIII - 6	VIII - 6	진동리 산343-3번지 일원				

도면 번호	획지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	I-14	I-14	진동리 산235-18번지 일원	용도	지정 용도	■ 원형녹지
	I-15	I-15	진동리 산235-20번지 일원		권장 용도	-
	II-10	II-10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외 의 용도
	II-11	II-11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V-12	V-12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V-13	V-13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건폐율	-
	VI-5	VI-5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III-2	III-2	진동리 1333번지			
	IV-6	IV-4	진동리 산334-7번지 일원	용적률	-	
	VII-21	VII-21	진동리 산340번지 일원			
	VII-22	VII-22	진동리 산340번지 일원			
	VII-23	VII-23	진동리 산340번지 일원	높이	-	
	VII-24	VII-24	진동리 산343-1번지 일원			
	VII-25	VII-25	진동리 산343-1번지 일원			
	VIII-7	VIII-7	진동리 산343-3번지 일원			

남해군 공고 제2019 - 816호

양식어업면허 처분 및 정치망어업권 포기 공고문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정치망어업권 포기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남 해 군 수

○ 양식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²)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517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창선 서대	151,000	2019.06.10 2029.06.09 (10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999-7	박영일	신규 개발

○ 정치망어업권 포기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²)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정치 제123호	정치망	-	창선 율도	151,380	2012.11.09 2022.11.08 (10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999-7	박영일	신규 개발

※ '17/18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신규개발

알 림

남해군의회 규칙 제29호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의회의장 (인)

2019년 6월 13일

남해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남해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을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공무국외출장의 범위) 남해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남해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남해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 중 “남해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을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해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되되,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의원과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의장은 위원이 위촉 당시 소속된 분야에서 이적 등 신분변동으로 추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심사기준) 심사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제1항 중 “소집하며” 를 “위원장이 소집하며,” 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제2항 중 “1인” 을 “1명” 으로, “의사담당” 을 “의사팀장” 으로 한다.

제7조제4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남해군의회가 개최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및 심사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장계획서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출장계획서를 제출한 의원에게 통지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계획서는 3일 이내에 남해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출장기간 및 출장경비) ①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중 “허가권자는” 을 “의장은” 으로, “공무국외여행” 을 “공무국외출장” 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남해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u> 2. <u>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u> 3. <u>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u> 4. <u>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u> 5. <u>그 밖에 남해군의회의장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u> <p>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남해군의회의원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u>남해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u></p> <p>제1조(목적)-----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p> <p>제2조(공무국외출장의 범위) 남해군의회의원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u> 2. <u>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u> 3. <u>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u> 4. <u>남해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u> 5. <u>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u> 6. <u>그 밖에 남해군의회의장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u> <p>제3조(허가권자)-----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 -----.</p>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해군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소속 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 2.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 3.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와 남해군수가 주관하는 공무국외여행의 일환으로 의원이 여행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정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심

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
간위원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④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적
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
하되,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
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의원과 교육
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
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
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
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
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
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사
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의장은 위원이 위촉 당시 소속된
분야에서 이적 등 신분변동으로 추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6조(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필
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
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되어야
한다.

②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
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여행인원이 2인 이
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기관
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
하여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
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 공휴
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
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
중되지 않도록 한다.

⑤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
정하여야 하며, 여행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6조(심사기준) 심사위원회의 공무국외출
장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회의) ① -----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
----- .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
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서기 1인을 두고 서기는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이 된다.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에는 해당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
-----1명-----
---- 의사팀장-----.

③ (현행과 같음)

④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
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8조의2(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
우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
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남해군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
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
우는 예외로 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
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
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는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

제9조(여행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여행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및 심사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장계획서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출장계획서를 제출한 의원에게 통지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계획서는 3일 이내에 남해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사후관리 등) 허가권자는 공무국외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출장기간 및 출장경비)

①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6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 I.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 II.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 III.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 IV.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
- 총면수

○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남해군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남해군의회

(2) 속표지 예시

공무국외출장 개요

- 1. 출 장 국 :
- 2. 출장목적 :
- 3. 출장기간 :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첨부자료

-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 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